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3일, 임오경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임오경의원)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및 예술인 공제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공제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 임오경위원)

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등)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 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이하 “복지금고”라 한다)”를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6호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의2의 제목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금고는”을 “공제사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제사업 가입자의”를 “가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의3의 제목 “(복지금고의 사업)”을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제사업 가입자에”를 “가입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금고 재원”을 “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안 제11조 중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를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제4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
를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u>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예술인 <u>복지금고</u>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략)	제9조(정관)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복지금고(이하 “복지금고”라 한다)</u> ----- ----- ----- 9. (현행과 같음)	제9조(정관) ① -----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 <u>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u> ----- ----- ----- 9.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u>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u> 7. <u>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u> 8. ~ 12.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복지금고</u>----- ----- ----- 7. <u>예술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운영</u> 8.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u>복지금고의 재원</u>) <u>복지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u>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u>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 1. ~ 5. (개정안과 같음) 6. <u>공제사업</u>----- ----- ----- <u><삭 제></u> 8. ~ 1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의2(<u>공제사업의 재원</u>) <u>공제사업은</u>----- ----- -----. 1. (개정안과 같음)
--	--	---

	2. <u>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u> 3. <u>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 4. <u>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u> 5. <u>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u> 6. <u>그 밖의 수입금</u> 제10조의3(<u>복지금고의 사업</u>) ① <u>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 1. <u>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u> 2. <u>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u>	2. <u>가입자의</u>----- -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4.5. (개정안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0조의3(<u>공제사업의 내용</u>) ① ----- ----- ----- -----<u>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u>----- -----. 1. <u>가입자에</u>-----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련 공제사업

3.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위한 사
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복지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3. 재원-----

<삭 제>

② ~ ④ (개정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u>공제사업에 대하여</u> <u>는 「보험업법」을</u> <u>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u>한국예술인복지재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u>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 ----- --.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 <u>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 -----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 ----- ----- ----- ----- -----.	제18조(과태료) ① -- ----- ----- -----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1. ~ 3의2. (개정안과 같음)
4. 제11조를 위반하여 <u>한국예술인복지재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 --- <u>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u>	4. ----- ----- ----- <u>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u>회) 또는</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가입자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1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예술인 <u>복지금고</u>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 략) ② (생 략)	제9조(정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u>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u> -----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u>예술인 복지금고</u> 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u>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u> 8. ~ 12. (생 략)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공제사업</u> ----- ----- ----- <u><삭 제></u>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가입자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제10조의3 (생략)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6·제10조의7 (현행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과 같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
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
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
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
제(또는 공제회)-----
-----.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
청 및 제공) ① -----

제10조의7제1
항-----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4. 제11조를 위반하여 <u>한국예술인복지재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u>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② (현행과 같음)
--	--